

편집위원회 규정



사단
법인 **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**

(사)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(사)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(이하 '학회'라 함)의 학회지 발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의 구성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70명 이내로 하되, 학회의 부회장(학술담당)은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0.07.><개정 2025.1.10.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편집이사 중에서 연구실적과 대외활동 등을 평가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7.1.12><개정 2020.10.07>

제3조 (전문분야) 학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되며, 전문분야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부분과를 둘 수 있다.

- 열공학, - 동력공학 및 기계역학, - 재료 및 가공공학
- 유체공학, - 제어 및 계측공학, -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
- 선박방재기술 및 해양안전, - 기타 마린관련(해기교육, 국내외규격 등)

제4조 (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)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고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- ① 위원의 위촉은 학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외부추천을 통하여 시행한다.
- ② 위원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학회양식(신청자 일반사항, 세부 연구분야, 연구실적, 대외활동 등)을 제출한다.<개정 2017.1.12>
- ③ 선정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, 권역의 다양성과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분야별 약간 명으로 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.
- ⑤ 편집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유 또는 위원의 활동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의 면직 또는 충원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<개정 2017.1.12>
- ⑤ ③항에 의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국한한다.

제5조 (위원회 회의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① 위원회 회의(이하 '회의'라 함)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성립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한다.
- ②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개최하며,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 한다.<개정 2017.1.12>

제6조 (위원회 심의)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 및 결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- 논문심사 및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
- 논문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-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연구윤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
- 투고논문 및 저자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<개정 2017.1.12>

제7조 (의결)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출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다른 위원에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,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